

-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-

# 검 토 보 고

## 1. 제안이유

-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, 기능 습득 지원 및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자활근로사업에 대하여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6조(지역자활센터 등)에 따라 지정된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고자 「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5조에 의거 예산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위탁대상 : 자활근로사업
- 위탁사무
  - 자활근로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
  - 사업 참여자 선발에 관한 사항
  - 사업 참여자 인건비 등 예산 집행 및 사업결산에 관한 사항
- 추진근거
 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6조(지역자활센터 등)
 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」 제12조(자활사업의 위탁시행)
  - 「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」

○ 민간위탁 필요성

-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, 교육, 일자리 창출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활근로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

○ 민간위탁 적성성 검토 결과 : 적정

○ 민간위탁 성과평가 : 한국자활복지개발원(보건복지부)

※ 2021년(72점), 2022년(62점)

○ 민간위탁 예산 : 년 1,533,737천원(국비80%,도비10%,군비10%)

○ 위탁기간 : 2024. 1. 1 ~ 2024. 12. 31(1년)

※최초위탁일 : 2004. 5. 10.

○ 수탁기관 선정방식 : 수의계약(자활사업 안내 지침 P75)

- 기존 및 현재 수행중인 사업(자) 선정
  - 수행중인 자활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기수행중인 기관(사업자)과 재계약이 가능하며, 이 경우 시장진입성·자활기업 창업전망·수익금 발생·참여자의 자립유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시·군·구청장이 결정(시·군·구 결정 → 기존사업자와 재계약 → 자활기관협의체 사후보고)

○ 수탁기관 :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

- 소재지 :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66, 3층
- 시설규모 : 132m<sup>2</sup>(센터 사무실, 회의실)
- 구성원 : 6명(센터장, 실장, 팀장 4)

○ 그동안 자활근로 사업현황

(단위 : 천원, 개, 명)

년도	사업비	사업단 수		참여인원	비고
2023년	1,425,126	9	(시장진입형3, 사회서비스형4, 인턴도우미형1, 게이트웨이)	80	
2022년	1,398,541	11	(시장진입형5, 사회서비스형4, 인턴도우미형1, 게이트웨이)	92	
2021년	1,352,041	11	(시장진입형4, 사회서비스형4, 인턴도우미형2, 게이트웨이)	96	

#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6조(지역자활센터 등)
 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」 제12조(자활사업의 위탁시행)
  - 「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」
-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
- 민간위탁 성과평가결과

### 4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자활근로사업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, 민간위탁을 현재 수탁법인과 재계약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6조(지역자활센터 등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(자활사업의 위탁시행) 등에 따라 자활근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된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음
-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·기능 습득 지원 및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자활근로사업운영에, 현재 수탁기관은 지역자활근로사업의 다년간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추었고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되어 전문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 민간위탁 재계약이 적절하다고 판단 됨.